

예산총칙

2025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501,287,414	15,038,622
일반회계	436,605,118	13,098,154
특별회계	64,682,296	1,940,469
공기업특별회계	18,780,673	563,420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8,780,673	563,420
기타특별회계	45,901,623	1,377,049
수질개선 특별회계	26,153,073	784,592
주택사업 특별회계	4,777,184	143,316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818,150	24,545
자활기금 특별회계	2,267,469	68,024
산업지구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10,590,004	317,700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412,878	12,386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274,565	8,237
발전소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	608,300	18,249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 해당없음

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000,000천 원으로 한다.

제 5 조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25,800,000천 원이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일시차입금의 한도액은 15,038,622천 원으로 한다.

제 6 조 다음 경비에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동일 비목 상호간 또는 타 비목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다.

- (1) 공무원 기준인건비
- (2) 차입금 원리금 및 이자 상환
- (3)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배상금, 법정전출금
- (4) 재해대책 및 복구비